

○○○공소청

우 / 주소 / 전화 / 팩스

수신자 : 발신자 : ○○○공소청장대리
검 사 ㉠

제 목 : **hangoo · 재hangoo사건 결정통지**

에 대한 항고·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결정	사건번호	항(재항) 제 호 <○○○공소청(지청) 형제 호>
	연월일	
	결과	
이유		

비 고

향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

① 고소인 및 「형법」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, 「공직선거법」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, ② 그 밖의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청에 재항고(「공소청법」 제57조제3항)를 각각 할 수 있으며, 위 기간 안에 재정신청서는 불기소결정청(지방공소청 또는 지청)에, 재항고장은 우리청에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.